

의안번호	2218689
의 퇴 인	문대림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.
추 계 번호	26B2448

해상사고 실종자 수색·구조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(수색·구조 비용의 선지급)	해양경찰청장이 기술적 한계 등으로 직접 수색·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, 위탁받은 업체에 수색·구조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8조(민간수난구조업체에 대한 지원)	국가가 수색·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9조제1항(실종자 가족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사고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(수색·구조 비용의 선지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(민간수난구조업체에 대한 지원)	
3	안 제9조제1항(실종자 가족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수색·구조 비용의 선지급(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·구조 업무를 위탁하고, 해당 업체에 수색·구조 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지급하는 수색·구조 위탁 비용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됨

- 다만, 향후 발생할 해상사고의 건수와 규모, 사고별 투입 자원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민간수난구조업체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 확보와 교육·훈련, 구조시설 유지 및 장비 구입·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민간수난구조업체별 보유 인력과 장비, 시설 규모 및 기존 수색·구조 활동 실적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제 지원 대상 업체 수와 업체별 지원액 등을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우므로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현행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¹⁾의 민간수난구조 동원을 위한 규정인 ‘수난구조 종사명령’에 따른 지급 비용은 동 법률 제39조²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

- 1) 제29조(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)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, 자동차, 항공기,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약자, 정신적 장애인, 신체장애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(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입거나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,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제39조(수난구조비용의 지급)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·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

□ 실종자 가족 심리상담·치료 지원(안 제9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사고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담·치료 서비스 제공,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는 향후 발생하는 해상사고의 건수와 사고별 실종자 수, 실종자 가족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해양수산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, 국토교통부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등에 유가족 관련 심리상담, 치료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-
2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
 3.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
 4.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
- ② 제1항의 "수난구조비용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1.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
 2.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·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
 3.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·자동차·항공기·토지·건물,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
 4. 구조된 물건의 운반·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